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 호

건설신기술 지정

‘실측 변형률과 처짐-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·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씨티씨(주)		
	주 소	우48741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, 612호(범일동, 동일타워)		
	전화번호	051-441-7292	팩스번호	051-441-7294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에이아이안전연구원(주)		
	주 소	우058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6, 701호(가락동, 동진빌딩)		
	전화번호	02-400-3402	팩스번호	02-400-3403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000호
- 명 칭 : 실측 변형률과 처짐-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·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
- 기술분야 : 토목 > 교량 > 교량 유지.보수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주행차량의 위치와 속도 정보 및 교량의 실측 변형률과 처짐-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교량의 정·동적 처짐을 산정하는 기술
- 신기술의 범위
특수교를 제외한 교량의 실측 변형률 응답과 구조해석에 의한 처짐-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주행차량 위치정보와 속도 정보를 활용하여 교량의 정·동적 처짐을 산정하는 기술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- 해당 없음

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